

제규정 개정 사전예고

(2023. 1. 18.)

1. 규정 명칭

-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기준」
- 개정기준 · 「중소기업팩토링 신용조사 및 조사자료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 「중소기업팩토링사기 부실 및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금융결제원 전산 연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따른 업무처리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미결제 매출채권 관리 기준 신설 및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및 중복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시스템 신규 도입
- 자료수집 방법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추가하여 자료수집 편의성 제고

4. 의견제출

사전예고된 제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용보증기금 플랫폼금융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① 사전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
- ② 제출자 관련 사항 :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보내실 곳>

담당자	전 화	팩 스	e-mail 주소	주 소
정다정 차장	053-430-4588	0505-071-5265	dajung921@kodit.co.kr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7,